

[사 건 명] 행정심 2016-26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6. 6. 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학급교체와 학생특별교육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6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6. 7.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사전면담이나 학부모와의 면담없이 사안 조사서만 받아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서는 담임교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어서 청구인은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과는 평상시에도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는 장난이나 말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도 서로 장난에 불과하며, 접촉이 아닌 흉내만 내었고, ●●●에 대한 부분은 급식상황에서도 줄을 서다가 신체의 일부가 접촉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폭력의 고의성은 없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에 ●●●과 ▽▽▽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부모님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문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제주도 여행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과는 계속 잘 지내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 ▽▽▽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마다 청구인의 담임교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과는 달리 청구인의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에 대하여 사전면담을 하였으며, 상담녹취와 진술서 확보 등으로 사전면담과 사안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이 신체적 접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담일지나 부장교사의 녹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 ▽▽▽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이며 고의성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 ▽▽▽ 측의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 때 청구인에 대한 교육적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이수 및 청구인과 ●●●, ▽▽▽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6. 4. 경 급식시간에 청구인의 생식기 부분이 ●●●의 다리에 접촉하였고, ●●●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다.
- 2) 청구인은 2016. 5. 하순 경 쉬는 시간에 청구인의 다리부분이 ●●●의 다리에 접촉하였고, ●●●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다.
- 3) 청구인은 2016. 4. 경 교실에서 청구인의 생식기 부분이 ∇∇∇의 엉덩이에 접촉하였고, 2016. 5. 하순 경 청구인은 ∇∇∇에게 똑 같은 행동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사전면담이나 학부모와의 면담없이 사안조사서만 받아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서는 담임교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어서 청구인은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임교사는 2016. 6. 1. 경 부장교사와 함께 청구인, ▽▽▽과 함께 상담을 진행한 사실, 담임교사는 청구인과 상담을 한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반성문 형식의 다짐서를 받은 사실, 2016. 6. 2. 담임교사는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나 학부모와의 면담 없이 사안조사서만 받아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서가 담임교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과는 평상시에도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는 장난이나 말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도 서로 장난에 불과하며, 접촉이 아닌 흉내만 내었고, ●●●에 대한 부분은 급식상황에서도 줄을 서다가 신체의 일부가 접촉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폭력의 고의성은 없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4번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있고, 분명히 청구인의 신체부위가 자신들의 신체부위와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4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보면 단순히 장난이나 청구인의 행동들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에 ●●●과 ▽▽▽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부모님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문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제주도 여행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과는 계속 잘지내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청구인의 ●●●, ▽▽▽에 대한 행위태양의 반복성과 심각성,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구인과 ●●●, ▽▽▽과의 분리 필요성 및 청구인과 부모님의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의 폭행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